

제345회 제1차 임시회
제1차 교육위원회
2024. 2. 27.(화)

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 
지원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의안번호	513
발의일자	2024. 2. 16.
회부일자	2024. 2. 19.



교육위원회  
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# 경상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손희권 의원 외 10명

### 2. 제안이유

-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추진으로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 미준수, 불합리한 처우 등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현장 실습생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현장실습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현장실습 운영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마.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현장실습의 방법, 산업체 발굴 및 선도기업 선정, 현장실습계약 체결, 현장실습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2조)

사. 학생의 안전보장, 현장실습의 평가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협력 체계 구축,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~제17조)

#### 4. 관련법령

-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
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

#### 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수렴중(의견없음)

#### 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법제심사(예산입법담당관): 검토 완료
- 나. 규제심사: 규제사무 없음
- 다. 부패영향평가: 부패 유발요인 없음
- 라. 성별영향평가: 개선의견 반영
- 마. 해당부서의견: 경상북도교육청 창의인재과 검토 완료
- 바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#### 7. 검토의견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먼저 안 제 1조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.
-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방향,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 등과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현장실습의 방법,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, 사전교육의 시행, 현장실습계약의 체결, 현장실습 점검, 학생의 안전보장, 현장실습의 평가 등에 관해 규정함.
-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, 표창 등을 규정함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및 「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대상임.

- 현장실습 고등학생은 아직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므로, 학생들이 현장실습 도중에 안전사고<sup>1)</sup>로 다치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습에 참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,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여야 함.
- 그런데 학생들이 사전에 산업안전과 권익침해 예방교육 수료 후 안전이 검증된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나,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장실습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- 최근 전국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재 및 권익침해 현황<sup>2)</sup>

현장 지도점검 결과 및 유형별 지적사항(권익침해)								산재 건수	산재+ 권익침해
연도	유해 위험 업무	수당 미지급	성희롱 등	부당 대우	실습 시간 초과	야간 (휴일) 실습 실시	계		
2018	0	0	0	1	2	1	4	3	7
2019	1	1	6	8	23	6	45	8	53
2020	4	0	5	9	5	3	26	6	32
2021	1	0	8	5	12	2	28	14	42
2022	6	0	5	4	5	2	22	22	44
합계	12	1	24	27	47	14	125	53	178

- 학교<sup>3)</sup>는 안전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실시

1) 경상북도교육청 2020년~2023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따르면 4년간 17,144명의 학생 중 7,876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, 기간 중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음.  
 2) 경향신문 2023.10.19. ‘현장실습생 비극’ 겪고도…여전히 줄지 않은 산재·공짜 근무  
 3) 교육부 2023.10.20. “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·권익침해 예방·조치에 만전”  
 - 권익침해 사안(125건)은 학교 복교·피해 구제 조치가 완료됨.

하지 않도록 기업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살펴야 하고, 학생은 원하지 않는 곳에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.

-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에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.
- 특히,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·시행하여 일부 고등학교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했던 「근로기준법」 미준수, 불합리한 처우 등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,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산업 현장의 수요 확보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현장실습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
※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: 7곳(광주, 부산, 울산, 인천, 전남, 전북, 충북)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---

- 교육부의 산재 건수(53건)는 '산재 신청' 및 '산재 외 처리'가 합산된 건수로 근로복지공단의 '산재 처리 완료 건수'와는 차이가 있음.